

●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20-142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60호(2015.7.30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-87호(2020.7.8.)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, 동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동법 제7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53)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에게 보입니다.

2020년 10월 28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275-3 일원

다. 정비구역의 면적 : 2,732.3㎡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- 시 행 자 : 더센티시티제이치(주) 대표 박래영

-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216호

마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0년 10월 28일

바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건폐율 (%)	연면적 (㎡)	용적률 (%)	층 수 (층)	높 이 (m)	용 도
2,202.4	1,364.87	61.97	27,407.79	888.21	지하6 /지상20	68.07	생활형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

2)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 계획	공 대 급 상	건축시설(㎡)			
		생활형숙박시설		근린생활시설	
		대 면 적	건 축 연면적	대 면 적	건 축 연면적
	계	1,850.6	23,029.86	351.8	4,377.93
	토지등 소유자			351.8	4,377.93
	일 반 공 급	1,850.6	23,029.86		

3)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
신 설				용도폐지			
종 류	규 모 (㎡)	설치비용 (원)	관리청	종 류	규 모 (㎡)	국·공유지 (㎡)	무상양여 (㎡)
도로	529.9	8,305,480,145 시행자 부담	서울시 중구청	도로	232.4	232.4	222.2

사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사전협의체 운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

아. 관계서류 : 도심재생과 비치서류와 같음